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3. 12. 17(화) 15: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1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 속기록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43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로 진행될 경우 거론되는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3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2013-44-164)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3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30분이 갑자기 왜 늦어졌습니까?

○ 이경재 위원장

- 제가 반포대교를 건너오는데 거기 수리가 되어서 막히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안동MBC(주)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법률·경영·기술·시청자 등 심사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 18일~11월 20일까지 3일 동안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평가점수를 말씀드리면 안동MBC(주) 등 6개 재허가 대상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의견을 제시

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자별 점수를 말씀드리면 안동MBC(주) 683.64, (주)KNN 708.25, (주)대구방송 684.45, (주)광주방송 675.65, (주)G1 675.80, (주)제주방송 694.61이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들의 주요 평가의견입니다. 공통된 사항으로 허가유효기간에 대해서 채널 재배치 등 주파수 정책의 신축적 운영에 대비하고 이동방송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허가 대상 6개사에 대해 허가유효기간을 3년을 부여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편익증대, 지역DMB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방영 및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등 DMB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청·군청 소재지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별 사업자별로 말씀드리면 안동MBC에 대해서는 유희채널에 대한 편성방안을 마련하고, G1과 제주방송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DMB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재정 안정성이 낮은 지역DMB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DMB 광고 결합판매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DMB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방송 지정 및 지역별 채널 단일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래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DMB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하되 무선국 혼신해소 등 일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제시해 왔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안동MBC(주),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G1 및 (주)제주방송에 대해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재허가하되,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미래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붙임 1>과 같이 재허가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정책 건의사항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1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결해 주시면 허가증을 바로 교부하고, 재허가 심사결과는 연말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붙임 1>입니다. 재허가조건(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부과할 재허가 조건으로는 무선국의 혼신을 해소하도록 하며, 또한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상파DMB 전담인력 배치 방안, 지역 지상파DMB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실적을 매년 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동MBC(주)에 대해서는 경북 영덕군 등 일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그 해소실적을 또한 유희채널에 대한 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G1 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서비스 제공 지역 중에 일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해소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과하도록 하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의결안건 나>에 앞서서 <보고안건 가>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사무국에서 왜 이 안건을 당초에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을 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07년과 '10년도에 역시 수신료 승인(안)을 처리한바 있는데 그 당시에 비공개로 진행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비공개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아무리 그것을 참고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그런 안건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에 안 맞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올라오는 절차도 제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3살짜리도 웃을 이야기 아니겠어요?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리고 KBS에서 이 자료 언제 넘어왔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12일 날 접수됐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오늘 며칠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17일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5일 만에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5일 만에 검토해서 이 정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5일 동안 고생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검토했는가,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수신기기 문제나 그다음에 연동제를 1차 조정(안)에서 이야기했고, '3년마다'라는 내용도 없고, 도대체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내용들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다 검토하고 나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쫓기는지, KBS에서 넘어와서 바로 5일 만에 올렸단 말이에요. 전례를 한 번 봅시다. 2007년과 2010년 예를 들었는데 2007년, 2010년 KBS에서 넘어와서 사무국에서 검토하고 올라온 시간들이 며칠씩 걸렸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렸다 칩시다. 5일 만에 올라오니깐 내용들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과장! 이것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KBS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수신료에 3년마다 불가연동제 넣고, 수신기기 넣고 하는 것, 이것 탈법 아닙니까? 법에는 이사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KBS가 분철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탈법으로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이것 서류 위조로 걸리는 것 아닙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현재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것이 상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KBS 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양 위원님, 잠깐만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 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온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7명의 여권 이사들이 단독처리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넘어온 내용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넘어온 것들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뭐가 쫓기는 듯이 올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이나, 탈법이나, 불법이나, 공문서 위조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접수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양문석 상임위원

- 국장, 최소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만 짚어서 상임위원들이 체크를 했는데도 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렸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대답해 보세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시간 상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다른 외압은 없었어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중심으로 오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잠깐만요, 그만 합시다. 이것 어차피 안건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니까 보고안건이니까 보고를 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따질 것 있으면 따져 가면 될 거니까, 양 위원 그 정도에서 양해하시고, 일단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하나씩하나씩 합시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말이 조금 엇갈리는 것이, 2010년에 준용해서 회의는 비공개는 시도했다는데 또 그때는 열흘 만에 보고한 것을 지금은 닷새 만에 보고하고, 그러면 언제는 준용하고 언제는 또 무시하고 사무국이 왔다갔다하는 태도가 맞는 것입니까? 그냥 보고하세요.

○ 홍성규 상임위원

- 일단 보고하세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본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를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7조에 의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 주요내용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KBS가 제출한 서류를 말씀드리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금액 조정(안) 본문 총 94쪽과 관련 첨부서류 총 141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KBS 제출서류 중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신료 금액 조정(안)에 있어서는 조정금액을 현행 2,500원에서 1,500원을 인상한 월 4,000원으로 금액을 제시하였고, 조정사유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광고 의존도를 줄여 수신료 수입 중심의 공영적 재원구조 확립, 디지털·스마트시대 공적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KBS 재정 현실에 대해서는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수입 하락 추세, 방송제작비 급상승과 디지털 전환비용 압박 가중 등으로 해서 재원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에 자구노력 추진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14년~'18년까지 5년간 누적적자는 4,715억원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정금액의 산정 기준은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하에서 향후 5년간 중기수지 균형을 맞추고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광고 비중을 줄이고 수신료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높여서 재원

구조의 공영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재원구조 측면에서 보면 수신료가 52.9%, 광고가 작년에 비해 연 2,100억원이 감소하여 전체 구조상 22.4%를 차지하고, 기타 수입이 24.7%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 요청사항으로는 물가연동제를 수신료에 도입하는 방안과 수신료 산정기간 법제화 문제, 그리고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기기”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료 산출내역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산출개요를 보면 자구노력을 포함한 중기수지 전망에 따라 2014년~2018년까지 누적 당기순손실 4,715억원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 이와는 별개로 공적책무 확대를 위해 예산 6,747억원을 반영할 경우에는 당기순손실이 6,612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적책무 확대 계획에 따른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5년간 공적책무 확대를 감안한 누적 당기순손실 전망을 보면 기본운영 경비 측면에서 4,715억원, 공적책무 확대 부분에서 6,612억원이 되어 합계로 1조 1,32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누적 당기순손실을 충당하고, 광고 축소와 EBS 지원 확대를 고려할 경우에 수신료 금액은 현행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KBS는 지난 11월 28일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수렴한바 KBS가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고 광고를 보조재원으로 하는 재원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하며, 적정수준의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KBS의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미디어서비스의 무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공정성, 공익성, 공영성 수호를 통해 시청자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공적책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입니다. KBS에서는 여론조사를 2회, 공청회를 3회, 이사회를 통한 의견청취를 5회 한 것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론조사의 주요내용입니다. 전국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인식의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000원을 인상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69.8%, 1,500원 인상에 대해서는 42.2%, 2,000원 인상에 대해서는 23.2%, 2,500원 인상에 대해서는 15.4%가 수용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언론학회 등 250명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방송환경 변화 상황에서 KBS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 86%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12%가 현재 수준이면 된다, 2%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66.9%가 찬성, 21.1%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제시한 10대 약속을 이행할 경우에 수신료를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냐는 의사에 대해서 현재 수준인 2,500원에 대해서는 13.9%, 3,000원은 19.9%, 3,500원은 13.5%, 4,000원은 15.5%, 4,500원 2.4%, 5,000원 25.1%로 나타났습니다. 공청회와 의견청취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자구노력, 지출 절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등의 지출내역 공개, KBS-1TV와 2TV의 회계분리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고에 관련해서는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광고 축소 또는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광고 폐지 시 국민들의 수신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는 다큐, 시사, 예능 장르 부분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보도 관련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지역성 구현에 있어서 KBS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과 소수자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

있습니다. 수신료 산정절차에 있어서는 국민의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고 산정 근거에 투명한 공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신료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0일 제774차 KBS이사회에서는 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이 불참하였습니다. 참석이사 전원 합의에 의해서 월 4,000원으로 수신료 조정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안은 지난 7월 3일에 2개 의안이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최종 의결된 수정안은 현행 금액이 월 2,500원인 것을 1,500원 인상하여 월 4,000원으로 조정하고, EBS 배분비율은 3~5%로 상향조정하며, 광고는 2012년도 대비해서 2,100억원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검토방향을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를 마련하여 KBS의 제출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KBS 제출서류의 법률적 요건 구비여부와 내용상 보완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서 서류를 보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검토 의견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추진방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회계·법률·경영·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서 의견서를 마련한 후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KBS와 EBS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년도 KBS 재허가 시에 부과된 허가조건도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수신료 조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전담반 구성·운영과 의견서를 작성하는 문제는 지난 11일부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수신료 금액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채택은 가능하면 내년 1월 중에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견서와 KBS 신청서류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직후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EBS의 지원비율 조정 등을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은 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TV수상기뿐 아니고 수신기에 대해서도 KBS가 수신료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수신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나 태블릿PC, 그밖에 DMB 기기라든지 이런 모바일기기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KBS에서 왔던 것을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DMB 등의 이동수신기,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통신단말기 등으로 방송수신기기 형태가 다양화됨' 이게 KBS가 적어왔던 내용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과장이 보기에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이 부분은 KBS에서는 이 정도 들어와서..., 정책이 수신료 인상(안)과 별개로 정책 건의사항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만일 한다면 방통위에서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고, KBS 의견을 추가로 들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세계적으로는 전례가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외국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국가,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하는 것으로...

○ 김충식 부위원장

- 공영방송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외국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먼저 시작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됐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7명 단독의 반쪽 이사회지만 이사회 안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방금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록에는 안 나와 있는데 논의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두 번째로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리게 해 달라는 것도 이사회 회의록에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이사회 안건 뒷부분에 '물가연동제'라는 표현은 참고사항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안건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3년마다' 부분은 회의록에는 없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 제가 법적으로 자꾸 따지는데 중간에 죄송합니다. 방금 "회의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논의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논의되었는지 확인하면,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영역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그게 법적 상식이지요? 그렇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의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면 안 되지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하나는 이사회 회의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 대거 지금 KBS 집행부가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공식 문서예요, 비공식 문서예요? 공식 문서지요? 그러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공식 문서에 덧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서를 우리가 공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KBS 집행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지요. 5일 동안 줄속으로 올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방금 홍성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영국과 독일에서도 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나 DMB 등 이동수신기,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통신단말기 등을 수신료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동일한 부분인데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최소한 자신들이 이 첨부서류에, 해외 사례 검토되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26페이지 보시면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렇게 어디어디에서 한다, 언제, 어떻게, 어떤 논란 끝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최소한 이러한 첨부자료가 이 두꺼운 책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형적인 부실자료입니다. KBS 이사회에서 내놓은 것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것 공문서로 인정 못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자료들, 선언적으로 던져놓고 우리 떠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것 해서 '수신기기는 부과대상에서 빼게, 돈만 올려줘' 지금 이렇게 장난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5일 동안 검토하셨다면서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법률상은 수신료의 금액을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정책 제안사항은 KBS 집행부에서 그냥 방통위에 공문을 낼 때 말 그대로 정책 건의형태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는게 정확한 워딩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방송법 제65조에 보시면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정책 건의사항은 별도로….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수신료 금액에 대해서 따로 공문서가 왔어요? 지금 통째로 온 것이지요? 책 4권짜리로….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그게 수신료 금액이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금액이면 금액만 보내든가, 그리고 다른 것을 금액과 관련해서만 설명하든가, 지금 이것은 엄청난 제도적 변화 아닙니까? 지금 수신료 부과대상이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확인 안 했으면 이사회가 의결한 줄 알았을 것 아니에요.

○ 김충식 부위원장

- 아시다시피 지금 수상기 문제가 아니라 수신기기에까지 문제를 넓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방송과 통신 질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사회도 경유하지 아니하고 방통위에 올릴 수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명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4,0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50 몇 퍼센트로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 과장, 그것이 지금 현행 2,500원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60%….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올릴 때도 눈치를 살펴서, 물가인상 요인을 살펴서 10%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거에 국민의 세금과 똑같은, 한 전고지서에 함께 납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수신료를 60%를 올려서 4,000원을 갖다가 안겼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그나마 쳐다라도 보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일부 추천이사 7명이 4명의 의견은 듣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올라온 것 맞지요?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의 배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소수이사들과의 의견차이인데 소수이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KBS의 공영성 확보보다, 이경재 위원장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공영성, 그 공영성 안에는 제작의 자율성, 보도의 공정성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을 뽑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캠프에서 선거 앞잡이나 한 사람들 말고 대한민국의 반듯한 공영방송의 수장다운 사람을 뽑자, 그런 체제를 갖추자고 해서 3분의 2의, 특히 사장의 선임에 관해서만 특별 정족수를 도입하면 어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도국장, 보도제작국장 등의 주요 국장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임명동의를 받든지, 정 싫으면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든지, 그것은 야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틀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이유로 배척이 되었고, 또 방통위에 넘어오면서 그러한 소수의견들이, 소수이사들의 견해들이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은 채로 덜렁 11명 중에 7명의 의결 형태로 올라왔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신기기가 라든가 3년마다 자동 인상이라든가 이런 법률을 벗어난 건의는 차치하고도 이런 과도한 60% 인상안 이런 것들이 Due Process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진 안에서도 KBS1과 KBS2의 회계분리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회계분리는 수신료를 올리는데 선결조건입니다. 그것이 당장 오늘 내일 되지 아니하더라도, 회계를 분리한다고 하는 전제가 없이는 수신료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지상파 KBS에 대한 재허가 청문회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회계분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투명성을 즐기겠다고 하는 것이다, 종교인들이 개인 생활통장과 교회나 사찰 운영비를 한 통장에 넣고 애매하게 쓰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 심보와 다른 것이 없다, 바뀌라, 그리고 제가 삼일회계법인 회장에게 물었더니 일주일이면 바꾸어주겠다고 하더라, 그 회계분리를 왜 못 한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KBS 집행부에 했습니다만 이 회계분리를 이사회 안에서 논의가 있었으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여기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허점투성이의 보고안은 다시 KBS로 회부되는 것이 맞고, 이사회를 통해서 최소한 그동안 소수이사들이 주장해 왔던 명분 있고 당당한, 그리고 영속하는 공영방송 KBS를 위한 제도적 개선 틀도 최소한 소수의견으로 첨부되어서 다시 올라와야지, 이 상태로는 방통위에서 국회에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KBS 제출서류 주요내용이 쭉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현행 2,500원에서 조정금액 4,000원, 조정내용 월 1,500원 올리겠다고 했는데 KBS가 첨부했던 자료에 2010

년에 1,000원 인상과 그다음에 광고 무축소, 안 하고 갑자기 또 바뀌었던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지금 제출된 서류에는 2010년과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세상에 돈을 2010년에 1,000원 올리고, 2013년에 1,500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광고료 축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광고 축소하고 500원 인상하면 지금 계산으로 치면 1,200억원, 그러면 1,500원 올리면 3,600억원인데, 3,600억원에 2,100억원을 광고에서 빼겠다, 그러면 1,500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올렸던 1,000원은 2,400억원의 순수인상이었고, 이번에는 1,500억원 인상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 수신료 수입정책, 광고수입 하락 추세, 제작비 급상승, 디지털 전환비용 압박 가중으로 재원소요가 급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2010년보다 더 못한 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 모순을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 모순인지, KBS에 명확하게 이 모순에 대해서 KBS이사회에 시키세요. 어떻게 재원소요가 3년 동안에 급증했는데 2010년 안보다 더 못한 안을 들고 와서 급증에 대한 부분들을 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 광고를 빼겠다고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2018년 동안에 무려 4,136억원 22.4%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빼겠다고, 그러면 2010년 대비 연간 2,100억원 정도 빠지는데, 그러면 최소한 설명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공문서 위조적 혐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실의 총 집합체라고 보는 것이 광고를 빼겠다고 하는데 광고 2,100억원을 연간 어디에서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없다, 첨부자료에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광고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떤 형태로 빼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지금 자료에서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수신료 문제는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 공적책무입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그리고 가장 큰 경쟁의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고, 그다음에 보도의 공정성, 제작의 자율성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지요? KBS가 이것 이상의 더 큰, 그리고 더 시급한, 그리고 더 중요한 공적책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백 번 양보해서 공문서 위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손질하고 분칠한 이 정책제안에서 이 내용이 짝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정작 가장 걸림돌이었고, 가장 핵심이었고, 그리고 수신료 인상을 지난 5~6년 동안 질질 끌고 왔던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KBS는 한마디로 안 했던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요청하세요.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검토의견서 전문팀은 구성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구성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몇 명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저희들 직원들과 하는 것은 7명을 구성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상임위원들한테 보고하세요. 그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인원이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고 받지 못했어요.

○ 양문석 상임위원

- 계속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다음에….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의견'이라고 해서 사실상 적극적인 동의를 해왔단 말이에요. 시청자 의견이라고 쓴 2013년 11월 28일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도 대체 시청자위원들이 누구인지, 경력 그리고 그 시청자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사유를 받아오세요. 기본적으로 시청자위원회가 얼마만큼 지금 KBS가 공정한지, KBS 집행부가 뽑은 시청자위원회란 말이에요. 아주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뽑아왔다고 계속해서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이 시청자위원회인데, 시청자위원의 명단, 경력 그리고 선정이유, 그리고 회의록 제출하세요. 그다음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입니다. 1차 여론조사를 국민 대상으로 했고, 2차 여론조사를 전문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문가 대상으로 했는데 1,000원 인상이 69.8%, 70% 정도가 1,000원 인상을 지지했고, 그다음에 1,500원을 42%가 지지했고, 1,500원 인상을 58%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1,500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대상도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의 공정성이나 제작의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수신료하면 부딪히는 지점인데, 그리고 이경제 위원장께서도 야당 시절에 이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었고,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 박근혜 現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 시절에 이 문제 끊임없이 제기했던 이 문제가 어떻게 전문가 대상으로 해서 한마디도 질문이 없지요? 질문 있었습니까? KBS의 공정성, 공영성, 보도의 공정성, 제작의 자율성, 전문가 대상에서 설문지에 있습니까? 있냐, 없냐만 대답하세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없지요? 이게 무슨 전문가 대상 설문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공청회 및 의견청취 주요내용인데 광고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광고가 악의 축입니까, 아니면 정보 및 오락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광고 자체를 악의 축으로 돌려놓으면 광고학과를 개설하고 광고를 가르치는 교수들과 광고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그 과를 만든 대학은 다 악의 축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소입니까? 도대체 누가 공영방송이 광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제가 2,500원짜리 연필을 쓰다가 4,000원을 내요. 4,000원짜리 연필을 쓰려는데 연필은 똑같은 2,500원짜리고 1,500원은 다른 놈 나눠 줘, 그러면 1,500원 올리겠습니까? 더 낼 것 같아요? 그것도 물어보세요. 도대체 논리가 있어야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논리가 있어야. 마지막으로 60일 이내 검토의견서, 이것 3개월 추가할 수 있지요? 60일 더하기 추가 3개월 할 수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 양문석 상임위원

- 아니, 잠깐, 'O', 'X'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대답하세요. 없어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일반 행정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래서 90일까지 가능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방향에 '60일 이내'라고 딱 잘라서 올려요? 정확하게 '1회에 한해서'라는 것이 행정적 관행이 있었는데...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다면 참고로 물읍시다. 지난번에 수신료가 두 차례 국회에 올라갔을 때 며칠 만에 올라갔어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07년도에는 72일과 2009년도는 91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쪽 논의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를 하면 KBS가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는 그 기간, 그 기간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0일은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알파로 해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줄 수 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다면 왜 9페이지에, 이번 안건은 1월 중순에 올린다고 그렇게 촉박하게 예정해 놓았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자들이 하는 데서는 6주 정도면 최소한 6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KBS가 얼마나 자료를 빨리 제출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 김충식 부위원장

- 그것은 KBS 이사회에서 의결해 온 것을 지난 두 번과 똑같은 내용이 왔다고 할 때 하는 이야기이고, 전혀 다른 계수가 올라와 있고 지상파 운영의 현황이 다른데도 1월 중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무국이 정말 터무니없이 헛짚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둬 이야기하지만 국민들 세금 물리는 것인데 방통위에서 지난번에는 두 달씩, 세 달씩 봤던 것을 한 달 만에 갖다가 국회에 안겨준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자구노력 추진을 감안하더라도 5년간 4,700억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KBS의 주장이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자구노력은 인력감축 부분과 경영 정상성 경비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유희부동산 매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인력 감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16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국장, 지난번에 전임 김인규 사장이 국회에 보고했던 인력감축 계획을 기억하세요? KBS의 간부도 아니고 법인을 대표하는 전임 사장이 국회에 공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4,800명

중에서 600명을 감원하겠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도 KBS 스스로 자구안을 그렇게 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회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자구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했으므로, 지난번 국회에서 보고한 600명 감원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줄여 가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둔갑이 되어서 160명으로 줄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사회가 소명하도록 첨부를 시키세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여기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2007년 수신료 개정 논의 시점부터 계속 인력감축을 조금씩 시행해 왔다는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그 실적과 제가 보기에는 160명이라고 시늉만 하는 숫자 외에는 감원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 주머니를 털어가려면 스스로의 허리띠도 졸라맨다고 하는 최소한의 성의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란 말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것도 참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 표현이 실감날 정도인데 2007년부터 인력감축을 해 왔다, 자연감소분 퇴직자들 생기고 이런 것들 다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인규 사장이 2007년에 사장 했어요? 2010년 수신료 인상 당시에 약속한 것이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KBS 이사회가 보낸 이 자료가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답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란 말이에요. 답을 못 하게, 그리고 답하는 것 자체가 아주 웃기게 만들어 놓은 반론도 아닌 억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 문제, 명확하게 합시다. 청와대에서 1월까지 국회에 올리라고 외압 들어 왔어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런 것 없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노하우라고 이야기했지요? 노하우가 있는 것은 더 디테일하게 더 신중하게 더 많이 볼 것이 노하우입니다. 수신료 인상 같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세를 부과하는 준조세잖아요, 수신료의 기본적인 법적 성격이. 준조세를 증세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노하우는 속도의 노하우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아무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KBS에 요구를 해서 받고 또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잠깐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불가연동제 부분은 이사회 참고자료 부분에 붙어서 개선이 필

요하다는 정도 언급이 되어 있고, 수신료 산정기간 법제화와 수신기기 부분은 책자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이사회에서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느냐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제출한 자료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가감 없이 보고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보장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실적 중심으로... 여기까지 되어 있었는데, 보아한테 그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KBS 측에서는 된다고 보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 자료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본질적으로 경영의 참여는 이사회 소수이사 네 사람이 제작의 효율성과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틀이 딱 막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사회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반 조각짜리 정당성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나 현재 판결처럼 소수의견이라고 첨부해서 위원회에 올라와야지, 이렇게 덜렁 날치기처럼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의결해서 검토서를 국회에 보낼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적 위당이 어떻게 됩니까?

○ 김대희 상임위원

- 양 위원님, 저도 발언하면 안 됩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마저 이것만 하고, 뭐라도 많이 하십시오. 정확하게...

○ 홍성규 상임위원

- 시간을 주어야 많이 하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시간 많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 홍성규 상임위원

- 하세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수신료 금액 인상은 KBS 이사회가 방송...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읽어드릴까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예, 읽어주세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방송법 제65조를 보면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사회 심의·의결 후, 그러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지금 이번에 낸 것이 이것이지요? 이것이 핵심이지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KBS 이사회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KBS 이사회가 아니고 지금 한국방송공사잖아요. 한국방송공사와 KBS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달리 표현합니다. 왜? 법적으로 KBS 이사회여야 되기 때문에….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방송공사의 전체 책임지는 것이 이사회일 뿐이지, 그것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사회를 운영했던 사람이라 정확히 압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두 번째, 이사회 의결사항에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내용이 대거 포함됐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전체를 결정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사회가 이 조정안 통째로 의결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결할 때 하나하나의 의제마다 심의·의결하지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의결하잖아요. 금액이면 금액, 제도면 제도, 제도 중에서 지배구조면 지배구조, 중간광고면 중간광고 하나하나 다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 통째로 지금 이사회가 의결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고, 이사회 실제로 안건에서 어떤 내용이 첨부됐는지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첨부물까지 다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저는 바보입니까? 기본적인 취재도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KBS 이사들한테 취재도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5일 동안 줄속으로 올린다고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 안 하고 올린 사무처가 문제 아니야, 지금! 노하우가 속도예요?

○ 홍성규 상임위원

- 양 위원,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도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줄속을 올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 홍성규 상임위원

- 아니, 말 좀 합시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신료 인상안이 KBS 전 이사회 멤버들의 참여를 거쳐서 왔으면 더 바람직했을 테지만 그렇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 저쪽에서 안이 접수가 된 이 상황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본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느냐 안 되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금액을 과연 4,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금액적으로 숫자나 이런 것이 근거가 맞느냐, 그다음에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지금 KBS 쪽에서 내놓고 있는 것이 광고가 2,100억원 정도 빠져 나간다고, 축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야당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간제로 빠지는 것인지, 프로그램별로 빠지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매출 규모가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KBS 측에 접촉을 해서 명확한 계획을 받아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BS가 자구노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 그것도 그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161명 자연감소분 가지고 자구노력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획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강도 높은 추가적인 자구노력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해 온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강도 높게 우리가 같이 좀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KBS가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공적인 사업, 10개 분야

이렇게 해서 전체 60여개 과제를 내놓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EBS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국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그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시겠지만 EB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언제쯤 폐지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KBS 사장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표점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내심 환영합니다만 광고감축계획 그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김충식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회계분리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제도를 들여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다루어져야만 우리가 검토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KBS 측과 접촉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수신료를 올리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선 누구나 다 생각한 것처럼 돈이 모자라서 올리느냐, 재정문제냐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문제는 공영방송의 철학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소위 공영방송으로서 명실상부한 이를 테면 청정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 없는 방송이 필요하다, BBC나 NHK 같은 그렇게 광고 없는 청정방송으로서의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수신료를 100% 이상 올려야 할지도 모르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려서 결국에는 어느 어느 시점에는 광고가 없는 그런 청정방송으로 가야 하는 그런 깨끗한 공영방송의 철학을 담기 위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수신료 인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보면 광고를 줄여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명확하게 소위 시쳇말로 예를 들어서 언제라고 정하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이라도 KBS가 그런 청정방송으로 가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매우 미흡하다, 이것을 그냥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수신료를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바로 회계분리입니다. 그러니까 1TV는 수신료로 가고, 2TV는 광고료로 가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쯤은 그런 것을 해야 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7월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예를 들어 공청회라든지 또는 자체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꾸준히 있었고, 또 이사들 내에서도 소위도 구성해서 이야기해 보고 많은 이사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못해서 7명의 이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해서 넘긴 것인데, 그렇다면 부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소수의견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따라 붙어야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때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의 철학이 무

엇이나 이 부분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회계분리 문제 같은 것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수의견은 반드시 붙여 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KBS에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것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KBS 의견을 거쳐서 우리에게 의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조건이 많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계문제, 재정문제, 또는 앞으로의 의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도 하고, 또 당사자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청문도 하고, KBS 사장을 불러다가 방향을 들어본다든가 그런 절차가 앞으로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한 것 의견을 나중에 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덧붙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오늘 이런 안이 제출됐으니까 이제부터 심사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무진에서는 과거의 예를 보고, 또 과거 2007년 전에 4,000원 올리는 안이 됐었고, 또 2010년에 광고 축소 없이 1,000원 올리는 내용에 이번에는 500원만 더 플러스 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과거에 이런 연구나 토론 절차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월 중순이라고 아마 이야기는 했지만 토론하다 보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신료와 관련해서 아까 청정방송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방송의 공정성은 정권으로부터의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자본으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한, 현재 사회에서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정성 문제 스스로 제기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입법으로 규정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신료 관계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될 때 아마 입법사항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이 문제를 여러 번 국회에서 다루어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해서 통과될 수 있을지 또는 유보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보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것이 적절한지 다른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것은 이제부터 토론해 나갑시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고를 접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담반은 저는 상임위원단으로 관장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 전담반과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는 것이 추진방안인데, 현재 전담반 반장을 방송정책국장으로 방송정책국에서 올렸는데, 전담반과 자문단을 총괄하는 상임위원 1명이 총괄하고, 그리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전담반과 자문단 두 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수신료를 대하는 무게와 비중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타당한 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누가 책임을 맡느냐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상임위원 한 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위원 전담반은 방송정책국장에게 제가 위임한 것이 없는데 아직까지 그 구성안을 저도 못 받아봤는데, 하여튼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해서….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는 두 분 의견과 다른데 그 부분은 지금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다 국장 책임 하에 갔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 상임위원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은 법적인 검토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 회의에서 결론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상임위원을 책임으로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뭐가 걸리나요?

○ 홍성규 상임위원

- 어쩔지는 모르지요.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행위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 김충식 부위원장

- 좋은 전례는 많이 남길수록 좋고, 제가 아는 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논의하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8페이지 보시면 <2> 추진방안 해서 '위원회 「전담반(반장:방송정책국장)」 및 회계·법률·경영·경제분야 외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서를 마련한 후 위원회 상정'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부 전담반과 외부 자문단을 함께 통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무슨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이 우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잦단 말이에요. 그러면 잦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도 있을 텐데 그것을 저는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당장 여기에서 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따로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든 보고가 원안대로 접수될 것이냐, 아니면 수정안대로 할 것이냐 가닥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겠지요.

○ **이경제 위원장**

- 여기 안을 우리가 수정해서 보고받으면 이미 심사를 끝낸 것이냐 다름없으니까 일단 이것은 접수를 하시고,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전담반과 자문단 문제는 별도로 구성해서 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안은 지난 2010년도 안과 2007년도와 같은 차원으로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에서 자문단을, 그렇게 구청해서 올렸습니다. 과거에 보면 위원회 사무국에서 전담반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했고,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또 피드백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또 보다 더 KBS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서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특정 상임위원님이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방송정책국장 중심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효과는 같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경제 위원장**

- 하여튼 이것은 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언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문단도 구성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지는 않았습시다. 저희들이 접수한 후 보고할 때 전담반을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로부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했고, 결국 최종안 검토 의견서가 만들어지면 그때 최종적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과거에 보면 사무처에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논의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끼리 특별소위를 만드시든가 혹은 전담반을 위원님 차원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런데 문장을 보면 전담반 또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까지도 위원회 상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구성해서 여러 가지 검토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말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면 위원회 전담반을 상임위원 한 분을 반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을 일단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안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안건에 관해서는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사항)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2013-44-165) (비공개)

8. 기 타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제 위원장

- 이상으로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35분 폐회 】